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포상규정

제 정 2014. 3. 21

개 정 2015. 11. 10

개 정 2015. 12.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집)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 (종류) 과편집의 포상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학술대회논문상
4. 공로상
5.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제3조 학술상은 심사일 기준 지난 3년간 과학 편집 분야 우수한 논문이나 단행본을 발행하여 과학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책임저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논문상은 심사일 기준 지난 2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된 논문가운데 우수한 논문의 책임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학술대회논문상은 총회 학회 또는 과편집 주최 국제 학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또는 구연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 책임저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공로상은 본 협의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협의회 발전에 공헌한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기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 ①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단체.
- ②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제8조 (수상대상자) 이 포상은 이 규정 제6조에 규정한 공로상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과편집 회원 단체 소속 회원이나 개인회원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포상내용) 학술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여 필요한 경우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 학술상의 포상금은 본 협의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

1.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임원이 할 수 있다.
2.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 전의 소정 기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상과 학술대회 논문상의 경우에는 추천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
3.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임원회의에 추천한다.
4. 임원회의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5. 임원회의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12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포상위원회는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이 임명하는 4인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2. 포상위원회는 매 집행부 임기에 맞추어 새로 구성한다.
3.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 11조에 의거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포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고 임원회의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1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상방법)

1. 시상은 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2. 학술상, 논문상, 학술대회논문상, 공로상과 특별상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시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2014. 3. 21)

(시행일) 이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 3. 21)로부터 유효하다.